

#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2
----------	----------

제안일자 : 2022. 09. 20.

제안자 : 주택공간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주거복지사업 대상에 반지하 거주자를 추가함.

## 2. 수정의 주요내용

- 안 제7조제12호에서 “고시원 및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”를 “고시원 및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및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 거주자”로 수정함.
- 현행 제7조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, 안 제7조제12호를 같은 조 제11호로 조문의 위치를 수정함.

#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제12호에서 “고시원 및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”를 “고시원 및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및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 거주자”로 수정한다.

제7조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, 안 제7조제12호를 같은 조 제11호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7조( 주거복지사업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10. (생략)</p> <p>11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7조( 주거복지사업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11.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<b>12. 고시원 및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입주·정착지원</b></p>	<p>제7조( 주거복지사업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12. (현행 제11호와 같음)</b></p> <p><b>11. 고시원 및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및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 거주자</b>----- -----</p>
<p>12. (생략)</p>	<p>13. (현행 제12호와 같음)</p>	<p>13. (현행 제12호와 같음)</p>

##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고시원 및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및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 거주자를 위한 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입주·정착지원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주거복지사업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10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11. · 12.</u> (생략)</p>	<p>제7조(주거복지사업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1. 고시원 및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및 「건축법」 제2조제 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 거주자를 위한 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입주·정착지원</u></p> <p><u>12. · 13.</u> (현행 제11호 및 제12호와 같음)</p>